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76호)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또는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인하하도록 개정되어 내용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I. 주요 개정 내용

#### 1. 개정 이유

-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 2. 대상 물품

-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하기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 \* 제외대상 :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물이 몰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 3. 주요 내용

-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적용

현행 탄력세율	개정 탄력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킬로그램당 220원(2022년 4월 30일까지)</li> <li>- 킬로그램당 275원(그 외 기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킬로그램당 220원(2022년 4월 30일까지)</li> <li>- <b>킬로그램당 193원(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b></li> <li>- 킬로그램당 275원(그 외 기간)</li> </ul>

## II. 의견 제출

1. 제출기한 : 2022년 4월 14일까지

2. 제출서류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 제출방법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1) 전자우편 : kmkey8431@korea.kr
- (2) 팩스 : 044-215-8069
- (3) 전화 : 044-215-4331

##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붙임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Contact



임지웅 관세사

T 070-4353-5151  
E jwim@esein.co.kr



황혜준 관세사

T 070-4353-1597  
E hjhwang2@esein.co.kr

#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